

서울고등법원 2019. 1. 22 선고 2017나2074895 판결 [점유회수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I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,담당변호사 이병철

피고,피항소인 B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,담당변호사 이창환
변론 종결 2018. 12. 6
판결 선고 2019. 1. 22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7가합51377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 2. 수정하는 부분'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수정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'원고'를 'A 주식회사(이하 'A'이라 한다)'로, 이하 4면 4행까지의 각 '원고'를 각 '...'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4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아. A 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. 3. 8. 대구지방법원 2018 회합

1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, A 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관리인이 되었다.

이후 당심에서의 속행명령(민사소송법 제244조)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수계인이 되었다(이하에서는 A과 원고를 모두 '원고'로 통칭한다).

j

○ 제1심 판결문 6면 10행의 '아니한다'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,『[원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과 견련성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갖는지, 그에 기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의 당부와 무관하므로(점유회수 청구의 당부는 점유 침탈 당시에 원고가 실제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의해 좌우되고 본권의 유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),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.』

3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신광렬 판사 전휴재 판사 신용호